

2026년 제4차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

2026년 제4차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0일

인천대학교 총장

1. 채용개요

채용예정인원: 총 1명

채용분야 및 인원

연번	구분	채용분야	채용인원	채용방법	계약기간
1	무기계약직 사무원	진로취업지원	1명	공개경쟁채용	임용일부터 정년시까지 (정년: 만60세)

※ 합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.

채용분야 담당업무

채용분야	담당업무
진로취업지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로 및 취업 상담 기업체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구인업체 발굴 및 D/B 구축 기관 및 지자체 연계사업 기획·운영 학과 및 부서 협업 기반의 진로취업지원 연계업무 대학 행정 및 예산·회계업무 기타 부서에서 지정한 업무

2.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공통지원자격

1) 성별 및 학력: 제한없음

- 2) 본교 인사규정 제13조의2 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3) 임용 예정일로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
- 4)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
- 5) 최종 합격 후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종 합격 취소

※ 응시자 결격사유

•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(결격사유)

-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⑧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⑨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⑩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⑪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•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의2조(응시자격의 제한)

- ①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②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
-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채용분야 지원자격

채용분야	지원자격 및 우대조건	채용인원
진로취업지원	<p>[필수조건: 제한없음]</p> <p>[우대조건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•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• 4년제 대학 취업부서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대학생 대상 진로 취업유관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• 교육학(인적자원개발), 상담(진로), 직업교육 전공자 • 정부재정지원사업(교육부, 고용노동부) 운영 경험자 • 기업체 인사 및 교육 업무 경력자 	1명
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3. 보수 및 복무

채용분야	보수	복무
진로취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호봉제 - 약2,191,000원(월) • 기본급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 포함 ※ 이외 명절휴가비,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(성과상여금 포함)은 인천대학교 내규에 따름 ※ 개인별 호봉 확정 결과에 따라 보수는 변동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- 주 5일, 주당 40시간 근무

※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. 접수일정 및 유의사항

□ 접수기간: 2026. 4. 20.(월) ~ 5. 4.(월) 14시까지

□ 접수방법: E-mail 접수

○ E-mail 주소: recruit@inu.ac.kr

- E-mail 접수 시 유의사항 -

- 제출서류는 **하나의 파일로 스캔**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이메일 '수신확인' 을 하기 바람.
- 제출기한(원서접수 마감 시간) 경과 시 채용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접수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됨.

□ 제출서류: 「별첨」 제출서류(응시원서 등) 양식 참조

□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.
-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모든 증빙자료는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서류상 유효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. 단,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.
 - ※ 진위여부 확인, 원본 대조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, 기간 내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.
- 관련 분야 경력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,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, 직위(직급), 부서명, 담당업무(상세기재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발행기관의 직인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.
 - ※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, 발급담당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.
 - ※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.
- 관련 자격증은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, 원본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함.

- 블라인드 채용 안내 -
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학교, 인적사항(출신지역, 성별, 가족관계 등)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. 개인정보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- 이메일 기재시 학교명/직장명이 나타나는 메일 계정 기재 금지

5. 채용 일정 및 절차

□ 채용 전형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	2026. 4. 20.(월) ~ 5. 4.(월)	대학홈페이지 등 공고
원서접수	2026. 4. 20.(월) ~ 5. 4.(월) 14시까지	이메일(recruit@inu.ac.kr)
서류전형	2026. 5. 11.(월)	
서류전형 합격자발표	2026. 5. 13.(수)	※ 합격자 대학홈페이지 등 안내

면접전형	2026. 5. 19.(화)	※ 대상자 개별통지 ※ 장소: 인천대학교
결격사유 조회	2026. 5. 19.(화) ~ 5. 22.(금)	
최종합격자 발표	2026. 5. 26.(화)	※ 합격자 개별통지
임용	2026. 6. 1.(월) 임용 예정	

※ 채용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□ 전형별 세부사항

단계	구분	세부사항	비고
1단계	서류전형	1) 응시대상: 입사지원자 전원 2) 평가요소: 지원자격 정합 여부, 자기소개서 등 3) 평가기준: 지원자격 미충족자 불합격 처리, 지원자격 충족자가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 배수 내 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격예정인원: 5배수 • 동점자 발생 시 ‘취업 지원대상자’ 우선 선발
2단계	면접전형	1) 응시대상: 서류전형 합격자 2) 평가내용: 직무적합성, 지원동기,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점자 발생 시 ‘취업 지원대상자’ 우선 선발

※ (전형별 공통사항)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산 평균이 만점 점수의 50% 미만일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

※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,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음.

□ 평가점수 계산 및 동점자 처리 기준

- 각 전형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
- 동점자 처리 기준
 - (1순위) 취업지원대상자 선발
 - (2순위) 우대조건 보유자 선발
 - (3순위) 동점자 대상으로 위원간 재심의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

6. 최종 선발 및 예비 합격

□ 최종 선발: 최종 점수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- 면접전형 위원별 점수를 합산 후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산출하여 합격자 결정

□ 예비합격자 선발

-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.
-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.

7. 우대사항

□ 취업지원대상자(보훈) 가점

- 증빙서류는 관련 기관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
대상	우 대 사 항		적용전형
취업지원 대상자 (보훈)	가산비율	만점의 5% 또는 10%	서류전형 면접전형
	적용대상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※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※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채용단위별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미반영 (단, 응시자 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적용한 점수로 평가) ※ 전형별 만점의 40%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가점하지 않음. 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.	

8. 지원자 유의사항

- 지원자의 기재 착오, 오입력, 누락, 연락 불가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.
 ※ 응시원서 작성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정확히 기재
-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, 당초 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최종 합격 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는 경우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 대학의 인력 운영 계획 및 추가 합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본 채용 계획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인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임.
- 본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름.

- 채용서류 반환 -

- 신청기한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
- 신청방법: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(recruit@inu.ac.kr)
-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.

- 불합격자 이의신청 -

- 신청기한: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
- 신청방법: ‘불합격자 이의신청서’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(recruit@inu.ac.kr)
- 이의신청서 검토 후 개별 회신하며, 채용 전형과 무관한 문의, 시험 출제·평가 관련자의 개인정보, 출제 기관 등에 대한 문의는 미회신함.

9. 문의사항 ※ 평일 9시 ~ 17시 문의 가능

- 원서접수 관련 문의: 인천대학교 인력개발과(032-835-9374)
- 채용분야 업무 관련 문의: 인천대학교 취업역량개발과(032-835-9618)

인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

제1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9.3.29., 2019.5.24.>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성범죄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10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11.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9.3.29., 2019.5.24.>

제13조의2(응시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한다.

〈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〉

1.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2.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
3.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